붙임3 과업내용(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과업내용 (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제25조 및 제26조 관련)

사업명		2027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	발주부서	행정과
추진 단계명	확정 심의	[] 발주 전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변경 심의	[] 분석 [] 설계 [] 구현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과업 심의		
심 의 일 자		2026년 월 일	심 의 장 소	서면심의
심 의 결 과		[√] 승인 [] 불가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순창군에서 추진하고자하는 2027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의 제안요청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사업추진방안, 산출 내역, 상세 제안 요구사항 모두 적절하게 수립되었다 판단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

2026 년 9 월 4 일

위 원 장 김 인 숙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붙임3 **과업내용(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과업내용 (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제25조 및 제26조 관련)

사업명		2027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	발주부서	행정과
추진 단계명	확정 심의	[] 발주 전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변경 심의	[] 분석 [] 설계 [] 구현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과업 심의		
심 의 일 자		2026년 9월 4일	심 의 장 소	서면심의
심 의 결 과		[√] 승인 [] 불가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o 본 사업은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성능향상과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o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과업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으며 과업 내용이 적정함

o 또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중 요율제 방식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유지보수 예산을 산출하였음

o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한 과업내용 확정 심의는 명확한 요구사항 및 합리적 소요예산 산출 등 절차적 타당성을 갖추었기에 심의를 승인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

2026 년 9월 4일

위 원 김종남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붙임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제10조제3항 관련)

사업명	2027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유지보수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제안요청서)	유지보수기간 1년	12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유지보수기간 1년	12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⑤ 종합의견	유지보수 기간인 1년이 적정함	적정 사업기간 12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년 9월 4일

위 원 김종남 (서명)

순창군수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붙임3 과업내용(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과업내용 (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제25조 및 제26조 관련)

사업명		2027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	발주부서	행정과
추진 단계명	확정 심의	[] 발주 전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변경 심의	[] 분석 [] 설계 [] 구현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과업 심의		
심 의 일 자		2026년 9월 2일	심 의 장 소	서면심의
심 의 결 과		[√] 승인 [] 불가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 장애복구시간 기준이 문서 내에서 이중으로 규정되는 오류가 있음. MPR-CND-DSM-01은 신고접수 후 8시간 이내 복구, MPR-BKR-RES-01은 신고접수 후 4시간 이내 복구로 명시됨.
- 그 외 과업은 적절히 기술되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

2026 년 9월 2일

위 원 이동철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붙임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제10조제3항 관련)

사업명	2027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예산 산출 내역서가 FP 기반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SW 개발 사업이 아니므로 FP 기반 개발 기간 산정 대상이 아님.	N/A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제안요청서)	RFP 요구사항 중 대다수가 월간 활동으로 반복되는 활동으로 설계되어 있어 12개월이 적절함	12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유사 사업 자료와 비교하여 12개월이 적절함	12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1년간 유지보수 작업이므로 12개월이 적절함	12개월
⑤ 종합의견	RFP, 유사사업 자료에 기반하여 사업 기간은 12개월이 적절함	적정 사업기간 12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년 9월 2일

위 원 이동철 (서명)

순창군수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붙임3 **과업내용(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과업내용 (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제25조 및 제26조 관련)

사업명		2027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	발주부서	행정과
추진 단계명	확정 심의	[] 발주 전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변경 심의	[] 분석 [] 설계 [] 구현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과업 심의		
심 의 일 자		2026년 9월 4일	심 의 장 소	서면심의
심 의 결 과		[√] 승인 [] 불가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1. **과업내용 검토**: 적정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의 2027년 통합유지보수를 통해 354대의 현장 CCTV 및 연계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므로 사업 목적에 부합함

2. **소요예산 적정성 검토**: 적정
 산출내역서 내 대상 장비별 도입 단가와 유지보수 요율(0.08~0.12) 및 기성 장비의 하자보수 기한 경과 여부를 검토한 결과, 예산이 적정하게 산정됨

3. **적정사업기간 검토**: 적정
 연간 단가계약 및 상시 유지보수 용역의 성격에 맞춰 12개월(365일)의 사업기간이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장애 대응 및 예방 점검 체계가 타당함

4. **상용SW 직접구매(분리발주) 제외대상 여부**: 해당 없음
 신규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일괄 구매가 아닌, 기존 구축된 CCTV 관제 시스템 및 서버·스토리지 장비에 대한 통합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용역 사업임

5. **SW영향평가 재평가**: 해당 없음
 기존 공공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 및 운영 고도화 성격의 사업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우려가 없음

6. **보안 등 기타**: 적합
 제안요청서 내 보안 준수 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반영되어 있으며, 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철저한 보안 통제와 하자보증 체계 수립이 가능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

2026 년 9월 4일

위 원 황재윤 황재윤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붙임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제10조제3항 관련)

사업명	2027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해당 없음 (신규 개발이 아닌 유지보수 용역)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제안요청서)	"	12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	12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해당 없음 (연간 단가계약)	개월
⑤ 종합의견	적정 사업기간: 12개월	적정 사업기간 12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년 9월 4일

위 원 황재윤 황재윤 (서명)

순창군수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붙임3 **과업내용(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과업내용 (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제25조 및 제26조 관련)

사업명		2027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	발주부서	행정과
추진 단계명	확정 심의	[] 발주 전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변경 심의	[] 분석 [] 설계 [] 구현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과업 심의		
심 의 일 자		2026년 9 월 4 일	심 의 장 소	서면심의
심 의 결 과		[] 승인 [] 불가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1. 심의 결론

○ 제출된 과업내용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 대상으로서 사업 목적 · 범위 · 요구사항의 구성이 전반적으로 타당함.

○ 다만, 아래 2항의 지적사항은 계약체결(입찰공고) 전까지 제안요청서에 반영 · 정정할 것을 조건으로 함.

2. 조건부 승인 사항(계약 전 보완 필요)

가. 요구사항 상충 – 장애복구시간 기준의 이원화

○ MPR-CND-DSM-01은 고장(장애)신고 접수 후 8시간 이내 복구 완료로, MPR-BKR-RES-01은 신고접수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로 동일 사항에 대해 두 개 기준 상존

* 과업 이행 여부 판정과 지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요구사항이므로, 명확화 필요

나. 기술지원협약 대상과 하도급 불허 조항의 정합성 검토

○ PMR-PMR-COM-03에 따라 6~7개사의 기술지원협약 품목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제3장 1. 다.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전면 불허하고 있어, 제조사 기술지원의 법적 성격(하도급 해당 여부)이 불분명함.

○ 원제조사 기술지원협약은 하도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하거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의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 조항을 조정할 것.

다. 사업금액의 부가가치세 처리 명확화

○ 제안요청서는 사업비를 금188,455,980원(부가세 포함)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산출내역서

합계액 역시 188,455,980원으로 부가가치세 별도 산출 항목이 확인되지 않음.

라.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의 적법성 검토

○ 제3장 1. 마.항 제14호 「차기 용역계약 미성립 시 별도 계약서류 없이 본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계약기간 변경 절차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3. 권고사항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예산 확정 전 계약 대상으로, 예산 심의결과 및 낙찰일자에 따라 사업기간·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될 수 있는 바 과업내용 변경 절차(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대한 사전 안내를 제안요청서에 기재할 것을 권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

2026 년 9 월 4 일

위 원 이 경 하

순창군수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붙임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제10조제3항 관련)

사업명	2027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운영·유지관리(유지보수) 용역으로, 개발 기능의 신규·변경·삭제가 과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이에 따라 FP 기반 사업기간 산정은 적용 대상이 아님.	해당 없음
② 사업기초자료 (제안요청서)	적정함.	12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은 전년도까지 회계연도 단위(12개월)로 계속 발주되어 온 사업임. ○ 유지관리 대상이 전년 대비 증가(현장 CCTV 부분대상 포함 388대)하였으나 과업 성격은 동일하여 기간 조정 요인은 없음.	12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적정	12개월
⑤ 종합의견	사업기간 12개월 적정으로 판단됨	적정 사업기간 12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년 9 월 4 일

위 원 이 경 하 (서명)

순창군수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